

# 第 1 分科討論要旨

權            泰            峻\*

제 1 분과의 主題는 「境境權」이라고 되어 있지만, 發表者인 韓相範교수(東國人)는 「境境權의 法哲學的·生態學的 論究의 試圖」라는 論文으로 폭 넓은 범위에 걸친 境境權思想의 發達過程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대체로 내용은, 지금까지의 物質成長위주의 國家 내지 社會의 發展過程에서 오는 여러가지 被害로부터 人間이 保護받을 權利로서 環境權思想이 발달해왔으며 그와 관련해서 成長위주의 國家내지 社會의 發展過程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무절제한 産業化의 과정을 택하였기 때문에 産業化로 부더 오는 人間的인 被害에 대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주장하게 된 것이 環境權思想生成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고, 또 거기에 더하여 우리 人間들에게는 본래 自然에 歸依하려고 하는 또는 自然에 대한 歸屬意識이 있었기 때문에 環境權 認識의 뒷받침이 되었으며,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周邊環境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눈이 生態學的인 思考方式의 경향을 띠게 되어서 특별히 環境權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幸福追求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政治·經濟思想의인 각도에서 뿐만 아니라 生態學的인 論究를 통해서 環境權의 思想史의 背景을 論述하였다. 이 이외에도 人權으로서의 環境權의 문제라든지 또는 理性人과 經濟人의 葛藤關係라든지 등의 思想史의인 論述이 포함되어 있었다.

韓相範교수의 發表가 끝나고 나서 權寧星교수(서울大)와 金元主교수(慶北大)가 指定된 討論者로 5분 내지 10분씩 討論을 하고 기타 참석하신 분들의 활발한 自由討論이 있었지만은 討論過程중에서는 대개 그 초점이 環境權의 法的性質이 무엇이나라고 하는 데 집중되었다.

權寧星 교수는 第 5 共和國憲法에서 環境權이 규정된 位置 및 그 文言上의 表現으로 미루어보아 憲法制定者들은 環境權을 社會的基本權(生活權의 基本權, 生存權의 基本權)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環境權을 社會的 基本權의 하나로 보고 이 條項이 立法方針規定에 불과하다면 人間의 生存에 대해서 결정적인 威脅이 되는 生態學的 危機를 극복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環境汚染·公害로부터 身體·健康 심지어 生命까지 威脅을 받는 상태를 防止할 수 없게 되므로 環境權은 어떻게 해서든 具體的인 權利로 理論構成이 되어야 할 것이나라고 하고, 비록 環境權은 社會的 基本權을 규정한 條項에 위치하고 있으나 人間의 生命·身體의 安全을 위해서 國家에 대하여 어떤 措置를 적극적으로 請求할 수 있어야 하므로 請求權의 基本權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넓은 의미로 環境權은 經濟秩序 나아가서는

\* 第 1 分科討論 司會者,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長

財産權과도 관계가 있는 등 自由權의 基本權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가지 側面을 동시에 갖고 있는 綜合的인 性格의 權利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環境權에 관해서는 이를 具體的인 基本權으로 理論構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金元圭교수는 環境權은 人權의 大量破壞에 대한 排除權 혹은 豫防權 혹은 抵抗權으로서 새로 生成된 權利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國民이 國家에 대하여 그러한 破壞로부터의 自由를 保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自由權의 性格을 갖고 있고 동시에 오늘날의 社會的 法治國家에 의한 生活配慮를 請求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社會權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 오늘날 環境權은 自由權的인 性格을 밑바탕에 두고 社會權的인 性格을 정면에 강력하게 대두시킨 그러한 性格의 權利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實定法上의 規定이 있기 이전에도 人間의 尊嚴, 幸福을 追求할 수 있는 權利 등에서 環境權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意見이 모아졌던바 第5 共和國憲法에서는 명백히 規定되어 있어 이것을 직접적인 效能을 지닌 規定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憲法 제33조에 根據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예를 들면 環境影響評價制度和 같은 環境破壞에 의해서 직접 被害를 입는 住民들이 自己自身을 防衛할 수 있는 그러한 權利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自由討論에서 全昌祚교수(東國大)는 좀더 강력하게 環境權이 國家에 대한 義務化訴訟을 가능케 하는 정도의 직접적인 國民의 權利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非法律學者인 延世大學校 公害問題研究所長 權肅杓博士는 環境權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受惠의 內實이 公害로부터의 被害를 保護받을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生活便益 즉 좀더 적극적인 生活環境의 快適性을 追求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公害로부터 保護받을 權利라고 한다면 이미 舊憲法에도 國民의 保健에 대한 國家의 義務등을 통해서 充分한 配慮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 이것을 一步前進해서 生活便益의 增進이라고 한다면 環境權의 憲法的인 規定으로 인해서 앞으로 立法政策上 또는 法律解釋上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고 하였다. 또 慶熙大學校에서 環境學을 講義하는 강희주 교수는 環境學의 立場에서 보게 되면 環境이라 하는 것의 外延이 너무 넓어서 이것이 法的인 權利로 規定될 때 그 法的權利의 內容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가지로 理論의 研究와 解釋의 餘地가 남아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이런 정도의 論議들이 있었고 지세한 문제점들은 綜合討論에서 다른 分科의 主題들과 關聯해서 再論議되기를 기대하면서 미처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會議를 끝내었다.